

국가 R&D 특허의 ASEAN 주요국가 지원 방안

특허청 '11년 계획에 ASEAN+3(한·중·일)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흡한 상태이다. ASEAN은 동남아시아 경제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지리적·무역 측면에 있어서 매우 가까우며, 회원국 대부분이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정부의 의지도 뚜렷한 편이다.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말레이시아('08년 2,086건 등록), 필리핀('08년 838건 등록), 태국('08년 966건 등록)을 선정하였다.



한 유 진 조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ASEAN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미얀마의 10개국을 말하며, 인구 19억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경제발전속도 및 시장의 크기 등으로 인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는 적극적으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2011년 계획에 ASEAN+3(한·중·일)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흡한 상태이다.

ASEAN 국가들이 지난 몇십 년에 걸

쳐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장은 대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발명, 혁신,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¹⁾ 증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을 통해서 보면, 총요소생산성이 GDP 상승의 1/3에 못 미치는 정도인데, 이는 미국의 약 4/5, 프랑스, 독일, 영국의 2/3 수준과 비교된다.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대부분 실물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똑같은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특허권 점유율에 있어서도 취약점은 그대로 드러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따르면, 1990년대 ASEAN 국가들에 부여된 특허권은 5% 미만이었다. 미국특허청 자료를 살펴보아도 1991~2001년에 5% 정도만이 ASEAN 국가들에게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SEAN은 각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개발과 빈곤 감소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4년 「지식재산권 실행계획 2004~2010」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제도 체계 개선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협력과 대화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식재산과 관련한 문제와 영향에 대한 대중인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 실행 계획은 ASEAN 정부,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ASEAN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 및 소기업의 역동성, 효율성, 유연성이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국가 간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ASEAN의 학문, 혁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발달을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ASEAN 구성국가의

다양성을 극대화한다.

둘

째 지식재산의 생성, 등록, 상업화, 보호 및 시행에 있어서 국가별 정체성과 개요를 개발한다.

셋

째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의 등록 및 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네트워킹을 독려한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창출, 상업화 및 보호를 위한 홍보는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실제 ASEAN 내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동의 노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경쟁적인 국가로 변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넷

째 현재 ASEAN의 과학 기술 기반과 역량이 협소하고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 지역의 국가들이 특허권을 적게 보유하였다는 것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지난 1990년대

에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중이 0.2% 또는 그 이하였다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수치는 1990년대 이미 3%를 달성한 일본과 한국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사실상 싱가포르를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연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위험을 분담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연계와 제휴는 1980년대 초 전자, 생명공학, 자동차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연계와 전략적 제휴의 내실은 상대국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오랜 신뢰와 품질, 전달의 시기적절성에 달려 있다.

둘

째 ASEAN 국가들 사이에서 지식재산 등록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국의 R&D 활동에 대해 자연, 과학 기술 분야 및 방향, 생산성 및 상업적 실행 가능성 부분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정보 부족은 지식 재산 창출 홍보 및 해당 국가에서의 영향 평가에 대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셋

째 비용에 대한 문제이다. 선행 기술을 포함한 정보 검색은 무료가 아니며,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상업적 데이터 뱅크는 비용이 많이 든다. 만약 번역이나 기타 다른 기술 서비스까지 포함된다면 더욱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특히 출원과 등록 간의 회전율은 ASEAN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다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특허권과 관련하여 법률적, 기술적 전문 지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ASEAN 국가 내에서 11,000~16,000 달러 범위에 이른다.

넷

째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WTO 가맹국은 대체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권제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모니터링과 시행에 대한 열의가 각기 다양하다. ASEAN 국가에서도 역량 부족, 자원 제약 등 지식재산권법 시행을 위한 서로 다른 이유를 갖고 있다.

마지막

으로 국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유지 및 보호가 ASEAN국 기업들에게는 복잡하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조화를 위한 오랜 시도가 있어왔으나 국가 간 서로 다른 법, 규정, 절차로 인해 협의점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과 법 정 대리 및 해외 기술적 지식에 대한 비용이 상당하여, 종종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실행 계획 2004~2010』는 세 가지 주요

한 요지를 갖는다. 먼저, ASEAN 국가들 안에서 혁신적 경쟁적 부문과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식 재산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강조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연계 및 연구 개발 네트워크에 대한 홍보가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단위에서 지식재산을 경영전략 및 경영계획에 포함시키는 것과 IP 자산 평가(및 이를 위한 자립적인 시스템 툴킷 또는 시스템 패키지의 개발), 담보로서 IP 자산을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업의 활발한 지식재산 활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

째 ASEAN 국가의 지식재산 창출에 관한 것이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간소화, 합리화, 비용 절감, 및 IP 체계와 정책 또한 상표 및 디자인 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둘

째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문제와 그 영향 및 다양한 국제 조약 가입 및 준수에 대한 의견과 경험 교환 등이 있어야 한다.

셋

째 지식재산권에 대한 ASEAN

회원국들 간 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ASEAN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을 제외하고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필리핀의 경우, 특허청이 정부부처 또는 대통령비서실 안에서의 독립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도 특허청이 생겼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IP 관련하여 입법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들 국가들이 교육, 행정, 정부 기관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 결과로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IP 관련 통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는 법률 및 기타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ASEAN 국가들 사이에서의 특허청을 통한 정보 보급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시스템과 기구에 대한 인식과 친밀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광범위한 사업 개발서비스와 회계사, 일반 변호사를

1) 노동 및 자본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제외하고, 기술진보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포함한 지원활동 및 기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제안은 IP 개발, 등록, 관리, 상업화 및 보호에 있어서 너무 일반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서 유용한 조언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ASEAN 각국의 대부분 특허청은 ICT 인프라 및 시설,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 자원의 적절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보급 기술 및 기술 지식 권한을 갖는 이들 특허청은 IP 자산 창출 및 혁신을 위한 공동으로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ASEAN에서의 과학기술적 궤도와 수용능력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미사용 기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ASEAN은 충분히 기술 공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무역 측면에 있어서 매우 가까우며, 회원국 대부분이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

고, 정부의 의지도 뚜렷한 편이다.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어느 정도 지식재산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을 선정한다. 이 국가들은 특허청을 비롯한 지식재산관理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는 2,086건, 필리핀에는 838건, 태국에는 966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추후 이들 나라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이후 주변국 7개국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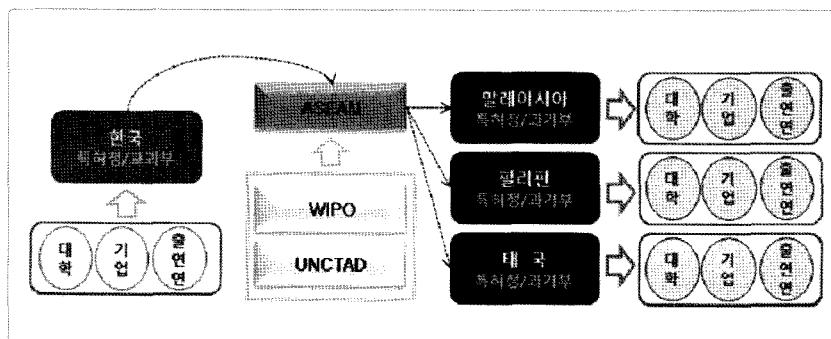
고 있는 기술 가운데 매년 무상실시 할 특허에 대해 선별을 요청한다. 둘째, 우리나라 정부에서 ASEAN을 통해 3개국 정부로 리스트를 전달한다. 셋째, 각국의 대학·기업·출연연에서 무상실시를 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요청 리스트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해당기술에 대해 기관에 무상실시하고, 필요 시 기술개발자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때, 각 국가의 시장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실제 시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대사관 상무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막대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을 하지 못하는 특허를 가장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R&D의 결과물로 매년 5천 건 이상의 특허가 등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은 9.3%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규모에 비해 빈약한 ODA²⁾ 비중을 높이고, 개도국의 기술자생력을 확보하는 ODA 정책으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11. 12 |



구체적인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대학·기업·출연연으로부터 보유하



2)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